

#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2년 3월 27일  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2월 19일 평창군수(도시경제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3월 2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2002. 3.26 제9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2년 3월26)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도시경제과장 석명준)

### 가. 제안이유

-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민원이 자주발생함에 따라 법령의 허용범위내에 조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전용주거지역(제1종·제2종)에서의 행위제한 완화(안 별표 1·2)
- 일반주거지역(제1·2·3종 및 준주거)에서의 행위제한 완화(안 별표3·4·5·6)
- 상업지역(일반·중심·유통·근린)에서의 행위제한 완화(안 별표7·8·9·10)
- 공업지역(일반·전용·준공업)에서의 행위제한 완화(안 별표11·12·13)
- 녹지지역(보전·생산·자연)에서의 행위제한 완화(안 별표14·15·16)
- 행정규제 관련 점검시 지적된 내용 삭제 및 반영
-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 완화 및 오·탈자수정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2001년 5월 12일 제정된 조례로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행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여 주는 것임.
- 전용주거지역·일반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·녹지지역에서 등 모든지역의 행위제한을 대폭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준수하였으며 2001년 7월19일 입법예고를 거치는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많은 부분이 완화되는데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어떤부분이 완화되는지?	○당초 녹지시설에는 공동주택과 문화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케 하는것임.

**5. 토론요지 : 없 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붙 임 :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부